

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. 2. 10 선고 2020가단1124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

피고A

변론 종결2021. 1. 27.

판결 선고2021. 2. 10.

주 문

1. 피고와 B 사이에 경북 의성군 C 전 4,235m²에 관하여 2018. 10. 11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B에게 경북 의성군 C 전 4,235m²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. 10. 12. 접수 제163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이슬기

별지